

2018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8. 2. 26. (월요일), 14:2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박영규, 김해숙, 서연호, 정형호, 정해임,
최성자, 허영일 (이상 7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심의사항】

- | | | |
|---|-------------------------------|----|
| 1 |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 공개 |
| 2 |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전수교육조교 인정 | 공개 |

【검토사항】

- | | | |
|---|--|-----|
| 1 |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대상 종목(예능분야)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비공개 |
|---|--|-----|

심의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3-001

1.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2017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13차 회의(‘17.12.19.)에서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이준아를 인정 예고함에 따라 관보에 30일 이상 공고(‘17.12.29.~)하고, 보유자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 지정일 : 1971.1.8. ※ 2016.8.29.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 전승자 현황
 - 전수교육조교(3명) : 김호성(남, ‘84.9.1. 인정)
 - 황규남(남, ‘84.1.4. 인정)
 - 이준아(여, ‘08.12.30. 인정)

2) 보유자 인정조사 추진경과

- 2016년도 전승자 총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6.1.27.)
- 보유자 인정조사 조사대상자 신청 접수(‘16.3월)
- 보유자 인정조사 지연 안내(‘16.9.6.) 및 재추진 안내(‘17.9.28.)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실시(‘17.11.2.)
- 보유자 인정조사 1단계 결과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17.11.10.)
-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실시(‘17.11.30.)
- 보유자 인정조사 2단계 결과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17.12.7.)
-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 실시(‘17.12.14.)

- 보유자 인정조사 3단계 결과 검토(무형문화재위원회 '17.12.19.)
 - 이준아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3) 예고사항(관보 제19163호(그2)/2017.12.29./문화재청 공고 제2017-378호)
 - 대상자 : 이준아
 - 예고사유
 - 이준아는 국가무형문화재 가사의 창법의 전통성, 실연능력, 해당 종목 전반의 이해도, 교수능력 등 전승기량 및 역량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함.
 - 예고결과: 이의 제기 없음

라. 검토의견

-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는 2013년 3월 12일 이양교가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이래 보유자 부재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의 전승 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 전승체계의 취약성 등으로 인해 종목 전승 및 보전과 관련하여 긴급한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판단되어 2016년 8월 29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음.
- 문화재청에서는 보유자 인정조사에 관한 관련 규정(「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보유자 인정 등의 조사·심의에 관한 규정(문화재청 훈령 제437호)」)을 개정하고 개인종목의 경우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조사방식 및 절대평가에 의한 보유자 인정방식을 도입하여, 단계별 적정기준 도달 시 다음 단계 조사를 진행하도록 함.
- 이에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 적정기준에 도달한 이준아를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로 인정 예고하였으며, 인정 예고 기간 이의 제기가 없었음.
-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이준아의 국가무형문화재 ‘가사’ 보유자 인정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이준아를 국가무형문화재 제41호 ‘가사’ 보유자로 인정함.
 - 해당 기·예능은 ‘가창(12가사)’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2.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전수교육조교 인정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전수교육조교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6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 지정명칭 : 중요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 지정일 : 1978.2.23.
- 전승자 현황
 - 보유자(2명) : 차부희(‘59년생, 남/목중, 노승, ‘13.7.17. 인정)
박일홍(‘57년생, 남/목중, 최괄이, ‘13.7.17. 인정)
 - 전수교육조교(1명) : 조용휘(남/목중, 양반, 사자, ‘02.2.5. 인정)

2) 추진경과

- 2016년도 전승자 충원조사 기본계획에 포함(‘16.1.27.)
- 해당 보유단체가 전수교육조교 선정 관련 자료 제출(‘16.4월)
- 조사방식 논의위한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6.6.22.)
- 인정조사 실시(‘16.8.11.)

3) 조사개요

- 일 시 : 2016.8.11.(목), 13:00~17:30
- 장 소 : 인천공연예술연습공간(인천)
- 조사자 : 관계전문가 3명
- 조사대상자(9명) : 보존회 추천 이수자 11명중 9명 *안○○, 신○○ 불참

- (연희)서향영('61년생, 남, '88.7.31. 이수), 장경숙('63년생, 여, '88.7.31. 이수)
이광수('65년생, 남, '93.7.31. 이수), 김○○(여), 이○○(남),
권○○(남), 전○○(남), 차○○(남)
- (악사)차○○(여)
-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단체
종목)에 의거 기량평가 및 면담조사 등 실시

라. 검토의견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수교육조교 인정 여부를 심의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 가결함.
 - 서향영, 장경숙, 이광수를 국가무형문화재 제61호 '은율탈춤' 전수교육
조교로 인정함.
 - 해당 기·예능은 '연희·가면제작'으로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8-03-003

1.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인정)조사 대상 종목(예능분야) 조사자 검토 및 추천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회의록의 비공개) 제2호에 따라 비공개함.